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38조(일상경비 등의 범위)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48조(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)에 따르면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등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 등 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, 지자체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의 기준액 범위 이하로 지출하도록 규정

※ 지자체별 일상경비 지출 가능 상한액이 별도 규정되어 있어 상한 기준액은 상이

□ 지적사항

사례1> 재난지원금 접수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장비 임차비용을 집행하면서 건당 일상경비 집행 상한 기준액 500만원 미만을 초과하였음에도 일상경비 집행

사례2> 500만원 이상의 수용비를 집행하면서 회계업무 담당과장에게 집행 요구 절차 없이 일상경비 집행

사례3> 500만원 이상 예산 지출 시 재무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나 절차 생략 후 물품구입·공사·용역 등 총 00건 000백만원을 일괄하여 일상경비 집행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각 지자체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